

「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에서 전환되는 구미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자본금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주식의 발행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공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20조)
- 공사의 사업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~제35조)
- 공사 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36조~제37조)
-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(안 제40조~제41조)
- 임직원에게 관한 경과조치 및 권리·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(안 부칙 제4조~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63조
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, 제80조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에서 전환되는 구미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설공단은 1999년 설립되어 지하공동구, 주차장관리, 공공체육 시설 관리·운영 등 구미시의 업무를 수탁 관리하는 위탁대행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, 공익사업의 대행은 수익이 적은 반면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어 수익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.
- 또한 구미시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시 자체개발 수요에

맞추어 공공시설 관리와 함께 지역개발에 의한 수익형 구조를 포함한 공사형태의 기업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- 따라서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 공단 조직을, 다양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고 지역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환원과 공공복리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복합형 공기업인 공사로서의 조직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한편,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보다 내실 있는 경영과 운영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개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, 공사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경영 촉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·감독 및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